

소득 단계	대상자	보험료액
제 1 단계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생활보호수급자 또는 노령복지연금수급자 •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2) 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 (※ 3) 을 공제한 금액과 과세연금수입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 × 0.5 (0.45) ※ 1
제 2 단계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2) 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 (※ 3) 을 공제한 금액과 과세연금수입의 합계가 80 만엔 초과 · 120 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 × 0.75
제 3 단계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전원이 구시정촌민세 비과세로, 제 1 단계와 제 2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기준액 × 0.75
제 4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은 구시정촌민세 비과세이지만 세대 중에 과세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분으로,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2) 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 (※ 3) 을 공제한 금액과 과세연금수입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 × 0.9
제 5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은 구시정촌민세 비과세이지만 세대 중에 과세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분으로, 제 4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기준액
제 6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2) 이 1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 × 1.2
제 7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2) 이 120 만엔 이상 · 20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 × 1.3
제 8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2) 이 200 만엔 이상 · 30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 × 1.5
제 9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에게 구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2) 이 300 만엔 이상인 분 	기준액 × 1.7

※ 1 저소득자인 분에게는 개호보험법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제 1 단계에 해당하는 분은 2015 년도부터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 2 단계, 제 3 단계에 해당하는 분은 시행 기간이 미정입니다).
표 가운데 () 내의 부담비율은 최대한 낮은 경우입니다.

※ 2 (1) 합계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공적연금 공제와 급여소득 공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

(2)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되는 장기·단기 양도소득에 관련되는 특별공제액 (아래의 (가)~(사)) 이 있는 경우는, 합계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가) 수용·교환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5,000 만엔 (최대)

(나) 특정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재해지의 방재집단지전촉진사업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2,000 만엔 (최대)

(다) 특정주택지조성사업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1,500 만엔 (최대)

(라) 농지 보유의 합리화 등을 위해 농지 등을 매각한 경우의 800 만엔 (최대)

(마) 거주용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3,000 만엔 (최대)

(바) 특정토지 (2009 년 및 2010 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 소유기간이 5 년을 초과한 것) 를 양도한 경우의 1,000 만 엔 (최대)

(사) 위의 (가)~(바) 중에서 2 개 이상의 적용을 받은 경우의 최고한도액 5,000 만엔 (최대)

※ 3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 (해당 금액이 0 미만이면 0)